

# 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 만 균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관악구 제3선거구 임만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0월 18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이 조례안은 지하철출입구등을 민간 대지 또는 건물 내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상한용적률의 적용 범위 확대, 인센티브 추가, 설치부담금 일부 보전 등을 정비한 조례입니다.

현재 도심 내 주요 보행공간인 역세권변 보도의 경우 출입구

등 각종 지장물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2010년부터 지하철 출입구 등 지장물 이설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규정 있으나, 설치 사례가 적고 출입구 면적 외 연결통로(지하철승강장~민간건물, 토지 내 출입구까지 설치)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

그래서 이번 조례안으로 지하철출입구등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. 지하철출입구등에 연결되는 통로(공공도로 상하부 설치) 및 설치부담금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향후 역세권에서 시행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에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